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6일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11.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 제안이유

- 강서구 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일부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1일 주차권 발급을 야간에 한함(안 별표 1 표)
- 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함(안 별표 1 제20호)
- 다. 의사상자 주차요금 감면 개정(안 별표 1 제26호)

- 라. 독립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1 제29호)
- 마. 5·18민주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1 제30호)
- 바. 보훈보상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1 제31호)
- 사.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1 제3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9. 27.~10. 17.)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개선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의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

○ 1일 주차권의 발행 시간 규정 정비(안 별표 1 표)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표에 준하여 1일 주차권은 야간¹⁾에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의사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 개정(안 별표 1 제20호, 제26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할인

-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이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완화됨에 따라, (자녀 수 기준) 차등을 두었던 할인 규정을 일괄 50%로 확대 적용

(기존)세자녀 이상 50% → (확대)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안 별표 1 제20호)

- 의사상자 주차요금 감면 확대(안 별표 1 제26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²⁾에 따른 의사상자
(기존)50/100 → (확대)80/100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 1 제29호~32호)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표)
8. 주차장 운영시간은 아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차장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간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5:00
○ 야간 : 주간시간 종료후 익일 주간시간 개시전까지

2) 제2조(정의)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 주차요금 감면사항 신설(안 별표 1 제29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에 따른 독립유공자 80/100 할인
- 5·18민주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1 제30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4)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초과 시, 1일 및 정기권: 50/100 할인
- 보훈보상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1 제31호)
 - 「보훈보상대상자 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5)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50/100 할인

3)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4)제4조(적용 대상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5)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1 제32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⁶⁾에 따른
참전유공자 20/100 할인

다. 종합의견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하는 주차요금 감면 사항의 개정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제2조(정의)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등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함.(20/100 → 50/100)

나. 수정내용

- 안 [별표 1] 제32호 중 “20”을 “50”으로 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p> <p>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u>20</u>을 할인한다.</p>	<p>32. ----- ----- ----- ----- ----- ----- <u>50</u>----- -----.</p>

참 고

서울시·자치구 요금 감면 현황(개정안 관련)

(2023. 9월 기준)

연번	서울시 자치구	1 일 주차권	감면대상						기타
			의사상자	독 립 유공자	5·18 민 주 유공자	다둥이	보 호 대상자	참 전 유공자	
※	서울시	노상(야간)	80%	80%	50%	50%	50%	20%	
1	강남구	-	80%	80%	80%	30%/50%	50%	80%	
2	강동구	노상(야간)	X	X	50%	30%/50%	50%	X	
3	강북구	노상(야간)	50%	X	50%	50%	X	20%	
4	관악구	노상(야간)	X	X	50%	50%	X	X	
5	광진구	노상(야간)	80%	80%	50%	50%	50%	20%	
6	구로구	노상(야간)	80%	80%	50%	50%	X	X	
7	금천구	노상 (운영시간 내)	X	X	X	30%/50%	X	X	
8	노원구	노상(야간)	80%	80%	50%	50%	50%	20%	
9	도봉구	노상(야간)	X	X	50%	30%/50%	X	X	
10	동대문구	노상(야간)	X	X	50%	30%/50%	X	X	
11	동작구	노상(야간)	80%	X	X	50%	X	X	
12	마포구	-	80%	X	50%	50%	X	80%	
13	서대문구	노상(야간)	X	X	X	50%	X	X	
14	서초구	노상(야간)	80%	80%	80%	30%/50%	50%	80%	
15	성동구	노상(야간)	80%	80%	50%	30%/50%	50%	X	
16	성북구	노상(야간)	80%	80%	X	30%/50%	50%	20%	
17	송파구	노상(야간)	X	X	50%	50%	50%	80%	
18	양천구	노상,노외 (10시간)	80%	80%	50%	50%	X	80%	
19	영등포구	-	80%	80%	50%	50%	50%	X	
20	용산구	노상(야간)	X	X	50%	50%	50%	X	
21	은평구	노상(야간)	80%	X	50%	30%/50%	X	X	개정중
22	종로구	노상(야간)	X	X	50%	30%/50%	X	X	
23	중구	노상 (운영시간 내)	X	X	50%	50%	X	X	
24	중랑구	노상(야간)	X	X	X	30%/50%	X	X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
 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